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청법인	명칭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대 표 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
	금액			
	처분방법			
처분사유				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인 사 혁 신 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(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신청인

→

접 수

→

확 인
인사혁신처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

→

결 제

→

결과 통지